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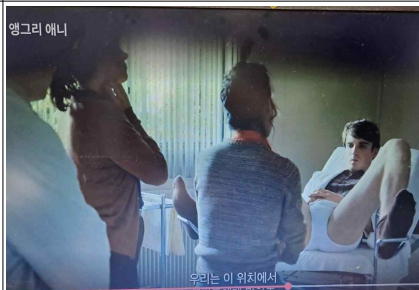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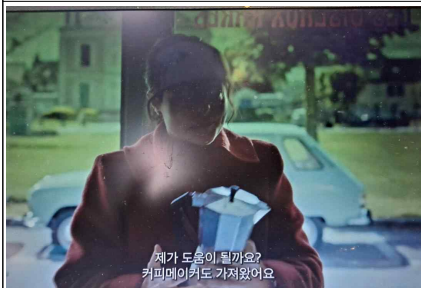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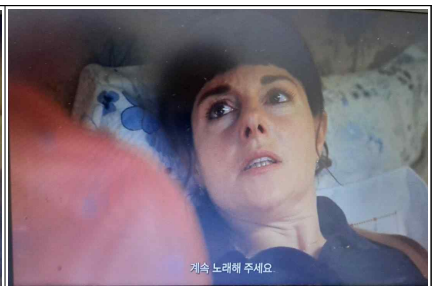
<앵그리 애니>

(블란딘 르누아르 감독, 프랑스, 2022)

1. 영화 감독 프랑수아 트뤼포(1932~1984)는 영화를 즐기는 3단계를 “본 영화 다시 보기, 영화 보고 글쓰기, 그리고 직접 영화 만들기”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화 맛을 열 배 즐기고 싶다면 “혼자 열 번 보는 것보다 열 사람이 보고 토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화는 “두 번째 볼 때부터 재미가 시작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영화를 어떻게 즐기나요? <앵그리 애니>로 어떤 재미와 의미를 맛보았는지 별점(5점)과 함께 감상을 나누어 봅시다.

2. <앵그리 애니>는 50여 년 전 프랑스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투쟁'을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 영화입니다. 임신중지권을 위한 싸움을 이끈 “임신 중지와 피임의 자유를 위한 운동 단체” MLAC의 이야기이자 두 아이를 둔 워킹맘 애니의 성장드라마라 하겠습니다. 시종 친절한 미소를 띤 애니 모습과 달리 영화 제목이 왜 <앵그리 애니>일까요? 애니가 화났을 만한 장면들을 찾아 들어가 봅시다. 애니에 빙의해서 화를 표출하고 내적 외적 변화를 말로 드러내 봅시다.

3. 영화는 운동 단체 'MLAC'의 활동상, 그곳 활동가들, 도움받는 여성들, 그리고 임신중지 수술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함께 하며 승리를 쟁취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캐미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 한국의 여성단체/여성운동과 서로 닮은점/다른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성운동 관련 여러분의 성장스토리도 들려주세요. (예시 장면)



4. 지난 7월 한 여성 유튜버가 ‘36주차에 임신 중지(낙태) 수술을 했다’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영상에 나온 정황이 임신 34주차 낙태 수술에 대한 앞선 판례와 유사해, 해당 판례에서 적용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어떻게 보았나요? 2020년 낙태죄 위헌판결 후 2021년 1월 1일부터 4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한국에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공감/비공감 등을 자유롭게 수다 떨어 봅시다.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 명시/여성신문 2024.03.05.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 시각) 여성의 임신 중지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임신 중지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세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 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시사인 2022.06.02.(2020년 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청회 정리)

1) 남은 건 모자보건법 14조

낙태죄는 형사법에서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모자보건법 조항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 2019년 현재 판결 이후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 총 7건 발의되었지만 모두 국회 계류 후 폐기.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 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 명시.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다. 그동안 임신 중지 수술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섯 가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2) 김정혜 부연구위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절충해야 하느냐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문제는 형법상의 문제다. 형법에서 생명권이라는 것은 진통 시를 기준으로 태아가 사람이 될 때 갖는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 생명권을 논할 수 있다. 태아 상태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기독교윤리 전공)-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자, 개신교 윤리신학자로서는 드물게 낙태죄 전면 폐지의 진술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임신 중지는 윤리적 딜레마에 가장 가까운 사항이다.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딜레마를 모면하는 쉬운 방식을 선택한다. 오늘 낙태법 존치의 문제는 결국 태아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안 살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이 공백을 자본이 메우고 있다고 본다.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임신중절이 시장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서조차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 임신중절 시술을 받기 힘든 청소년이나 이주 여성들은 카톡방을 통해 구한 미프진(유산 유도제)을 먹고 위험하게 ‘자가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가 발견되는 사건이 자주 보도되는데 심중팔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못 받고 불법으로 유통된 약을 먹었을 확률이 높다. 추가 입법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산부인과학회 또는 의사회에서 의사들 교육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임신중절 시술 항목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미프진을 공식 도입 등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4)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2020년 10월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가 제시)- ‘재생산 권리’란 ‘차별·강요·폭력·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의미한다. 셰어가 제안한 해당 기본법은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 포괄적 성교육, 일터 혹은 교육·보호·복지시설에서의 성·재생산 권리의 보장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특히 임신 중지에 대해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상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중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의료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 중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신 당사자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밝혀두었다.

5. 토론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배움이나 통찰, 해소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영화를 한마디 열쇳말/문장/그림으로 정리한 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시)

“<앵그리 애나>는를 말하는 영화다.”

“<앵그리 애나>는? 질문하는 영화다.”